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3605	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군수	군수
등록일자	2025. 3. 4.						2025. 3. 4.
결재일자	2025. 3. 4.						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						
		협조자					

2025년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(안)

《 2025년도 주요 내용 》

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(신규)

- 운영시기: 2025. 4.
- 참여대상: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
- 교육내용
 - 주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및 타시군 우수사례 소개, 분야별 이슈 논의 등

■ 주민제안사업 공모

- 공모기간: 2025. 5. ~ 6.
- 참여자격: 평창군민
- 대상사업: 총 사업비 3억원 이하 군 자치사무 전반

■ 예산편성 설문조사

- 조사시간: 2025. 5. ~ 6.
- 참여방법: 군 홈페이지, 읍·면 방문접수
- 설문내용: 군민 관심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 필요 항목 등

2025. 2.



2025년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(안)

-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고, 재정 운용의 건전성·투명성·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자원 배분 실현

I

운영개요

□ 운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)
- 「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
□ 운영방향

- 군민 누구나 예산운용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
-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
- 예산집행 과정을 주민이 직접 감시, 낭비요인 발굴·신고 등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·책임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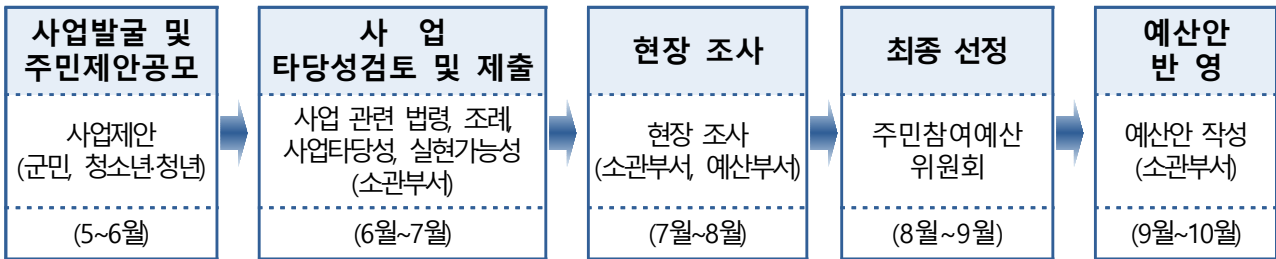
□ 주요연혁

- 2005. 08. 주민참여예산제도 입법화(지방재정법 제39조)
- 2007. 07.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
- 2011. 09.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(지방재정법 제39조)
- 2023. 08.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(14명)

□ 참여범위(군민)

-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□ 운영절차



II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

1 추진현황

□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제안 및 설문조사

- 추진일정 : '24. 8. 1. ~ 8. 20.
- 추진방법 :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면 조사
- 주요 설문항목
 -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(투자확대, 긴축재정) 및 필요분야 등
 - 주민제안사업 공모
- 주민제안사업 검토 결과 : 제안 6건, 사업 미반영

구분	소관부서	사업명	사업내용	반영여부
총괄 6건(기추진 1건, 부적합 5건)				
1	안전교통과	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	스쿨존 보행중 초등학생 휴대폰 사용방지 장치 설치 건의	부적합
2	안전교통과	안전한 스쿨존 조성사업	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는 장치 설치	부적합
3	상하수도사업소	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(도둔리, 하안리)	배수로 및 하수관로 설치	부적합
4	산림과	스마트 임업 지원사업	스마트 임업 지원사업 지원(스마트 임업 시스템 도입 등)	부적합
5	농산물유통과	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랍스타 지원사업	평창 관내 학생을 위한 학교급식 랍스타 지원사업	기추진
6	안전교통과	대형교차로 십자 횡단보도(도민제안사업)	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십자횡단보도 설치	부적합

□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실시

- 홍보실적 : 온·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홍보
 - 보도자료, 리플릿, 현수막, SNS 등

2 개선과제

- 제안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반영률
 - 군민제안사업 접수(6건) 되었으나, 부서 검토 결과 채택 없음
 - ▶미반영 주요 사유 : 상위법 위반, 사업비 한도(3억원) 초과, 국비 사업, 당해 연도 완료 불가 등
- 주민들의 낮은 참여도 및 관심도 부족
 -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부족
 - 행정용어, 절차 등이 생소하여 제안서 작성의 어려움
-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지역 현안 및 수요 대응의 한계

➔ 【 개선방안 】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및 참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예산 전 과정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 환경 조성 및 반영률 제고

Ⅲ 2025년 세부 추진계획

1 제안사업 공모

□ 공모형 주민제안 사업

- 기간 및 대상 : '25. 5. ~ 6. / 군민 누구나 가능
- 참여방법 : 인터넷(군 홈페이지), 우편, 읍·면 서면조사
- 대상사업 : 총 사업비 3억 원 이하 군 자치사무 전반

【 부적합 사업 】

- 총 사업비 3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
-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, 기 추진중인 사업, 국비보조사업
-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
-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적(보조)경비
- 군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

○ 세부추진일정

사업제안 (5월 ~ 6월)	■ 신 청 : 군민 제안 ■ 방 법 : 홈페이지, 방문, 서면 등 ■ 기 간 : 연중 접수, 집중신청기간(5월~6월)
↓	↓
소관부서 검토 (6월 ~ 7월)	■ 대 상 : 제안사업 ■ 검 토 : 해당부서에서 법령위반, 중복, 사업타당성 등 ■ 선 정 : 부적격사업을 제외한 사업
↓	↓
현장 조사 (7월 ~ 8월)	■ 대 상 : 소관부서 채택사업 ■ 검 토 : 해당부서에서 사업효과성, 민원발생 가능성 등 ■ 결 과 :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↓	↓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(8월 ~ 9월)	■ 대 상 : 소관부서 채택사업 ■ 검 토 :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■ 기 준 : 필요성, 시급성, 공공성 등 검토 ■ 확 정 : 익년도 예산편성 반영 최종 의견 제시
↓	↓
예산안 반영 (10월 ~)	■ 예산부서 : '26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최종 결정 및 의회 제출

2 공모외 군민 제안

□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

- 기간 및 대상 : '25. 5. ~ 6. / 군민 누구나 가능
- 참여방법 : 인터넷(군 홈페이지), 읍·면 서면 조사
- 조사내용 : 예산 중점 편성방향 및 군민 관심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 필요 항목 설문
- 결과조치 : 부서 통보 및 내년도 분야별 투자방향 설정에 반영

□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(상시)

- 「예산주민참여」 방 운영
 - 예산관련 자료 열람 및 의견을 수시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전담창구 운영
- 「예산낭비 신고센터」 운영
 -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상시 운영하며,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(신고 내용에 대해 현지 확인 후 조치)

3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[신규]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공무원 대상 교육

- 목 적 :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원들과 사업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
- 시 기 : '25. 4.(예정)
- 방 법 : 집합교육
- 내 용
 - (1차) 주민참여예산 참여 절차 및 타시군 우수사례 소개 등
 - (2차)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사업제안 평가, 분야별 이슈 논의 등

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

- 인 원 : 14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11명) ※ 20명 이내
- 임 기 : 2년('23. 8. 21. ~ '25. 8. 20. / 1회 연임가능)
- 일 정 : 2기 위원회 신청 및 추천(7월) → 위촉(8월)
- 역 할
 - 3억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검토, 보완 작성
 - 군민 제안 사업 적합 여부 결정 및 예산편성안 의견 제출
 -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발전방안 토의 등

5 주민참여예산 홍보

□ 온/오프라인 매체 활용

- 홈페이지 활용 및 SNS 홍보
 - 군청 홈페이지 내 팝업창, 설문조사 링크 등
 -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읍면별 밴드 등 다양한 매체 활용

- 소식지 및 각종 배포자료 수록
 - 평창이야기, 이장회의 자료 등
-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·배포
 - 읍면사무소 민원실, 기타 공공기관 등

□ 협조체계 구축

- 읍면사무소 및 사업부서(청년위원회 등)와 연계하여 교육, 홍보, 공모 제안 등 협조 요청

➔ **【제도정착을 위한 홍보】**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제안사업 공모, 온라인 참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참여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

6 예산관련 정보 공개

□ 재정공시 등 정보 공개

- 각종 예산관련 지표 등 예산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하여 군민이 예산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 확대
 - 예산서, 재정공시제도 운영, 설문조사 결과 등
 - 예산운용 결과, 업무추진비, 행사·축제경비,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현황 등
- 세입·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실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공개

IV 행정사항

- (전부서) 주민참여예산 운영 적극 협조
 - 주민제안사업 검토시 제안자 의견 청취 및 사업계획서 수정·보완 등 예산 반영 적극 채택·추진
- (기획예산과) 군 홈페이지(팝업광고, 설문조사 링크 등), 소식지(평창이야기) 등을 활용한 홍보

붙임 1

제안서 서식

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 제안서

☐ 제안자 (주민참여예산위원 해당 여부 ☐)

성명		휴대폰		이메일	
주소					
개인정보 취급	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 ☐ 동의				

☐ 제안사업

사업명	
사업위치	평창군 전역 또는 00읍면
사업대상 (수혜자)	
소요사업비	천원(추정) / 사업기간 : 2026년도
※세부산출내역	00장비구입: 2개 시군×1,000천 원(단가)×2개 = 총사업비4,000천 원
사업목적 (제안취지)	
사업내용	〈 제안 부적합 사업 〉 - 총사업비 3억 원 초과 사업 -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-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- 기추진중인 사업, 국비 보조사업 -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-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적(보조)경비 - 군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※ 사업대상(수혜자), 사업량,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(산출내역)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(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)
기대효과	
신청정보 확인경로	☐ SNS ☐ 유튜브 ☐ 홈페이지 ☐ 반사회보 ☐ 기타(내용 기재:)
20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	

※ 접수방법 : ① 방문 ② 우편 : (25374)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, 기획예산과 예산팀

문서관리카드기획예산과-3605 8/19

사 업 위 치 도

※ 필요 시 작성

현 황 사 진

※ 필요 시 작성

부서 의견서 작성 체크리스트

검토사항		체크
1. 군민제안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였습니까?		☐ Y ☐ N
	총 사업비 3억 원 초과 사업	☐ Y ☐ N
	계속사업(당해년도 완료 불가능 사업)	☐ Y ☐ N
	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	☐ Y ☐ N
	연례반복적·정책적(국가주도) 국비 보조사업	☐ Y ☐ N
	특정단체의 지원요구 및 프로그램 사업	☐ Y ☐ N
	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	☐ Y ☐ N
	특정인(단체)에게 사업효과가 한정되는 사업	☐ Y ☐ N
	시설 및 사회단체 인건비 및 경상경비	☐ Y ☐ N
2. 제안자의 제안취지,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까?		☐ Y ☐ N
3. 법령 및 지원근거를 충분하게 검토하였습니까?		☐ Y ☐ N
4. 평창군 전역(또는 읍면), 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?		☐ Y ☐ N
5. 제안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업입니까? * 해당인 경우 주민참여예산 편성 부적절		☐ Y ☐ N
6.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(산출)하였습니까?		☐ Y ☐ N
7. 전체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?		☐ Y ☐ N
8. 사업대상 및 사업량 등 수정·보완, 기 추진사업의 확대(연계) 등을 통해 사업실현성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까?		☐ Y ☐ N
9. 부서 검토의견서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까? (관련 법령, 조례 등 발췌)		☐ Y ☐ N
10. 팀장 및 과장의 검토를 받았습니까?		☐ Y ☐ N

[2026-접수번호]

○ 제안자			
성명		지역	00읍.면
○ 사업부서 검토			
사업명			
위치			
정책수혜자			
사업비			
사업내용			
추진 가능성	※ 수정.보완(제안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) ※ 통폐합(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사업간 통폐합 가능시, 사업명 및 사유 등 기재) ※ 부적합 사유 ☐ 법령위반, 지원근거 미비 ☐ 당해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☐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☐ 계속사업, 국비 보조사업 ☐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☐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☐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,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☐ 시설 및 사회단체 인건비 및 경상경비 ☐ 기타 사유(구체적으로 작성 :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)		
26년 본예산 반영 여부	☐ 반영 ☐ 미반영	미반영 사유	사유 작성
○ 평가의견(타당성, 사업효과 등)			
※ 추진 가능/ 불가능 사유 기재			
검토자	건설과 이평창 ☎(행정번호)	부서장확인	건설과장 김강원

- ※ 사업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격요인을 해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안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구체화
- ※ 수정.보완 및 추진 가능할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

○○○ 사업 추진 계획(담당부서 작성)

※ 작성대상

- 1차 사전검토(사업부서 검토) 시 채택 된 사업

☐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:

※지원근거 :

○ 사업기간 : '26. 0 ~ 0월

○ 총사업비 : 000천 원

- 산출기초 :

○ 주요내용 :

☐ 사업내용

○ 추진내용

-

-

☐ 향후 추진일정

○ 사업자 공모 : '26. 0월

○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 : '26. 0월

○ 보조금 교부 : '26. 0월

○ 보조금 정산 : '26. 0월

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결과

1. 회의 개요

- 일 시 :
- 장 소 :
- 참 석 : 대상 00명 중 00명 참석(000위원장 외 0)
- 내 용 : 사업제안서(부서 검토의견 포함)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

2. 회의결과 요약

- 회의결과 : 00건(채택 00, 부적격 00) * 작성 예시

사업명	사업내용	사업비 (산출내역)	채택여부	
			채택	부적격
0000 설치	* 장소(위치) * 내용 등	000천 원 (00개×단가000천원)		

3. 주요 의견

《○○○○ 위원》

○

○

《○○○○ 위원》

○

○

4. 건의 사항

-
-

5. 향후 계획

-
-

회의 사진	

첨부 : 회의록 1부. 끝.

평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결과서

○○○○위원회는

군민제안사업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○○○○위원회

위 원 장 ○○○ (서명)

부 위 원 장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위 원 ○○○ (서명)

20 년 월 일

평창군수 귀하

붙임 : 결과표(및 평가표) 1부.

사업 우선 순위 조서

순위	사업명	사업내용 (요약)	사업비(천원)	비고
1				
2				
3				
4				

제안사업 평가표

○ 위 원 명 :

○ 사 업 명 :

○ 평 가 표

항 목	평가지표	배 점						점수
			1	2	3	4	5	
	총 합							
필요성	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시급성	이 사업은 내년에 바로 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공공성	이 사업은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효과성	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목 표 달성도	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수 혜 대 상	이 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성평등	이 사업은 남녀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사업비 적정성	이 사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정한 규모입니까?	그렇지 않다						그렇다

위원 검토의견 :

20 . . .

주민참여예산위원 성명 ○○○ (서명)

현장확인 결과보고서

○ 사업명 :

대 상 사 업		참 석 자
구분	☐ '26년 예산 반영 사업 ☐ '27년 예산 반영 사업	
현장 조사 일시		
위 치 (주소)		
현장조사 의견	(사업효과성, 사업수혜 범위, 반대민원 발생가능성, 사업규모 적정성,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)	
현장사진		
<사진설명>		<사진설명>

20 . . .

작성자 : ○○○ (서명)

□ 『지방재정법』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"주민참여예산기구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『지방재정법 시행령』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"예산과정"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 / 2. 설문조사 / 3. 사업공모 /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2.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